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8.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6. 1. 19. 김원이의원 등 12인

나. 회부일자: 2026. 1. 20.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 5. 19.)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

제1차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2026. 5. 20.) 상정 · 축조심사 · 의결(수정
가결)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 5. 20.) 상정 · 소위심사
보고 · 찬반토론 ·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원이의원)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 행위에 대해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을 정비하려는 것임.

대기업등이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한 경우에 종전에는 바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만 형사처벌하도록 함(안 제1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성소미)

개정안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한 대기업등에 대한 현행 형벌 규정(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 벌금)을 삭제하고, 해당 의무 위반 시 행정기관이 먼저 시정을 명한 후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형벌을 적용하도록 하여 처벌을 완화하려는 것임.

정부는 2025년 7월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구성하여 형벌 완화 및 금전적 책임성 강화, 경미한 위반의 과태료 전환, 先행정조치-後형

벌부과, 사업주 형사리스크 완화, 선의의 사업주 보호 등을 추진 방향으로 하여 경제형벌 규정 합리화를 추진 중이고, 2025년 9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여 정비 대상 형벌 규정을 발표한 바 있는데, 개정안은 9월에 발표한 제1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임.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에 포함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비 대상 규정

형벌규정	행위(구성요건)	(現) 형벌		개선안
		징역	벌금(원)	
생계형적합업종법 (§15-1)	대기업 등은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해서는 아니됨에도 이를 위반한 자	2년	1억 5천만	先 행정조치-後 형벌 부과
전통시장법 (§72-①)	시장정비사업 완료 후 6개월 이내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1년	3천만	先 시정명령-後 형벌 부과

현행법은 대기업등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하거나 확장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동시에 법 제 9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위반과 관련된 행위의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그 명단을 공표하며,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100분의 5 이내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최대 연 2회까지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정부는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통해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 금지 의무 위반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등 행정제재가 존재함에도 형

벌까지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경제형벌로 민간의 창의적인 경제활동이 제약된다는 중견기업연합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해당 처벌규정을 시정명령을 미이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형벌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음.

개정안은 행정제재를 통해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위반행위는 먼저 시정명령 단계를 거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형벌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위반행위 시정의 실질적인 효과를 도모함과 함께 기업의 형사처벌 리스크를 줄이고, 사업상 제약 요인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참고로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에서 시장정비사업 완료 후 6개월 이내 대규모점포 개설을 미등록한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만 형사처벌 하도록 처벌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대표발의, 제2216159호)이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다만, 개정안 부칙은 이 법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고,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시정명령 없이 곧바로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두고 있는데, 과도한 형벌 부담을 완화하여 민간의 경제활동의 제약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할 때 종전 규정에 대한 신뢰보호 이익에 비하

여 신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얻는 이익이 더 크다고 보이는 바, 시행일을 앞당기고, 법 시행 전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선 행정조치 후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임.

개정안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도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를 시정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곧바로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은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개정안에 동의하고 있으며, 부칙 수정을 통해 시행일 및 적용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김원이 위원)

과도한 형벌 부담 완화라는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개정안 시행 전 위반행위에도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수정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

※ 심사보고서 불임서류

1.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 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6. 5. .

제 안 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과도한 형벌 부담 완화라는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개정안 시행 전 위반행위에도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부칙을 수정하려는 것임(안 부칙).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 률안에 대한 수정안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부칙 제1조 중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을 “공포한 날”로 한다.

안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제15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u>공포 후 6개월</u> <u>이 경과한 날</u> 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 <u>공포한 날</u> ----- -----.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 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15조제1호 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조(벌칙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 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 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제15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법률 제 호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
2. 제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시정명령 위반행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조(벌칙) ----- ----- ----- -----.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u>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한 자</u>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
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	2. 제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